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호(기소), 유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규목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고정1146, 2025고정131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의 경우, 다른 직원이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업무



의 일환으로 수업자료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해 준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되어 있던 노트북을 다른 직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 위 E 계정에서 자신의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E 계정에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3. 7. 3. 'C'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서 숙제 검사, 테스트 결과 입력 등 보조 업무(강의 업무 제외)를 수행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해자의 E 계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G에 학원 관련 자료를 모두 저장해두었는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 우려 등으로 위 E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 ③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접속된 피해자의 E 계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위 일람표 '비고'란 기재 각 파일이 전송되었는데, 그 이메일의 제목은 위 각 파일명이고 이메일의 본문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④ 위 일람표 순번 8 '비고'란 기재 파일[2025고정131(병합) 사건의 파일과 동일함, 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고 한다]은 약 450개의 교재, 약 5,000개의 수업 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여 약 7,800개의 파일을 압축한 용량 28.9GB의 파일인 사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



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학원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 피해자로부터 그 파일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지적을 받을까봐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⑥ 한편 피고인이 숙제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위 G에 저장된 자료들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2024고정1146 사건의 증거기록 100면), 이러한 경우 그 이메일 제목("비문학 작업", "숙제검사표")이나 본문 내용("다 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나머지 지문들도 보내드리겠습니다")이 위 ③항에서의 그 것과는 상이한 점, ⑦ 피고인은 개인용 노트북을 위 학원에 가져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노트북으로 게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늦어도 2023. 7. 20.부터 테스트 답안지 분실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 ⑧ 피고인은 위 각 파일이 모두 전송되고 불과 3일 후인 2023. 7. 27.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일주일 정도 전부터 다른 곳 면접을 보고 다녔고, 새로 일하기로 한 곳이 정해지고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직 및 이직을 준비하던 시기에 위 각 파일이 전송된 것인 점, ⑨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사직한 이후 2023. 9. 17.경 '국어학원교재 제작업체'에 취직한 사실, ⑩ 피고인은 사직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1. 5.경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위 각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피해자의 다른 직원이 누구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해당 직원을 특정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E 계정 접속 및 파일 전송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E 계정 접속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위 E 계정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압축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업무적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이메일을 보낸 목적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함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며 원심 증인 I의 진술과도 부합하나, 피고인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이메일에는 제목이나 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더욱이 원심 증인 I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존 직원들에게 신규 직원에게 E 계정을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피해자의 E 계정을 통해 신규 직원에게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전송할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기존 직원들로서는 신규 직원에게 자료를 보낸 경위나 목적이 표시되도록 이메일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로그인된 다른 직원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고 그 안에 저장된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E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등 참조),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입사하고 일주일 후에 피해자의 E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



'학원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 피해자로부터 그 파일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지적을 받을 까봐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E 계정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_____

 판사 박지은 _____

 판사 김성은 _____